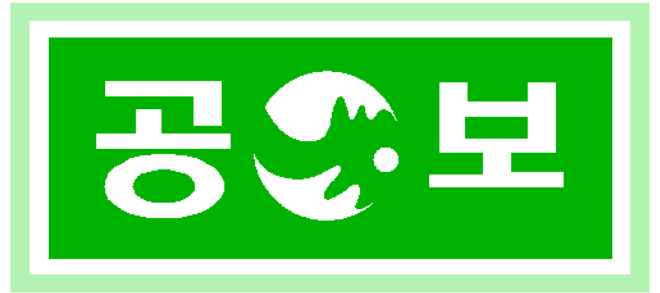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기 관 의 장	기 관 의 장



제 695 호 2011. 6. 20(월)

## 공 고

○울산광역시 북구공고 제2011-422호[공시송달 공고] ..... 2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문화홍보과(☎219-7207 행정7207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 - 422호

### 공시송달 공고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·점유자에게 직접방문 및 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, 주소(소세지)의 불명, 소유자·점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공고합니다.

2011년 6월 20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등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○ 부여하는 도로명주소

고시대상사	주민등록번호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
				“별도열람”

※ 도로명주소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지적팀(전화 052 219 7283,7293) 및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부여(고시)일 : 2011. 7. 29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1. 7.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세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※ 고지내용의 진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지적팀(☎052-219-7283,729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